

2016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(시험의 공고)에 의거 2016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13일
제주지방우정청장

1. 시험일시: 2016. 7. 23(토). 10:00~11:00(60분)

○ 입실시간은 9:20입니다.

2. 시험장소: 노형중학교(제주시 노형1길 28, 740-8901)

○ 노형동 탐라도서관 인근

3. 응시자 준수사항

[일반사항]

가.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

※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
응시할 수 없음

나. 시험당일 09: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
따라야 합니다.(08:00부터 시험실 개방)

다.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)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

- 학생증,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개명 등으로 원서접수 후 성명 및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함께 소지하여야 합니다.

※ 응시표는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(<https://kpost.jinhakapply.com>)초기화면의 “인터넷 원서접수”에 접속하여 출력가능

라.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『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』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(사인펜에 "컴퓨터용"으로 표시되어 있음)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
※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

마.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 하여야 하며,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. (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)

※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 ■ ■ ■ ■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됨

바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, 수분 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

사. 시험 종료 후에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아.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.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차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 및 스마트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

[부정행위 등 금지]

가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~5호, 7호 위반행위

-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,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
 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- 병역·가점·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~3호 위반행위

-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 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 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
다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

-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 - 시험실에서 문제책이 배부된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4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: 2016. 8.23(화)

-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(<http://koreapost.go.kr/jj>)와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(<https://kpost.jinhakapply.com>)에 게시합니다.

5. 가산비율 및 확인 안내

가. 가산비율표

구 분		가산비율	비 고
자격증 소지자	공통적용 가산점 (전산직 제외)	과목별 만점의 0.5~1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	· 자격증 가산점은 1개만 인정 ·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'나 ~ 다' 참고

나. 자격증 소지자

-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(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)을 소지한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구 분	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	
	1%	0.5%
9 급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	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(구 워드1급) 컴퓨터활용능력 2급
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.

다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(정보화자격증 사본) 등을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16. 7. 22) 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6. 기 타 사 항

- 가. 필기시험에서 과락(40점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다. 2017년부터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최소 인원으로 실시되거나 실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우정청 사업지원과(☎064-728-596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